##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01 제출연월일: 2024. 7. 19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7호 중 "여성"을 "청년·여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	제4조(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		
수립·시행) ① (생 략)	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<u>여성</u> 에 대한 직업교육훈련	7. <u>청년·여성</u>		
8. • 9. (생 략)	8.・9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